

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
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중소기업의 업종 다각화 및 자생적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해
구미지역 중소기업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연구 인프라를
활용한 기업주도형 R&D추진 필요
- 나.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2회계연도 구미시
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
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
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(1) 출연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(2) 출연금액 : 0.9억원
- (3) 사업기간 : 2022. 1. 1. ~12. 31.
- (4) 사업내용 : 전주기 연구개발사업 및 특허출원 지원, 기술교류회,
수요맞춤형 세미나 참가 지원 등

(5) 출연근거

- 법 령 : 지방재정법(제18조)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제20조)
- 조 례 :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(제4조, 제5조),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4조)

나. 주요 사업

- (1) 개방형 R&D과제 기획 : 지역 유망기업 발굴을 통한 국가 R&D 사업발굴·수주 및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
- (2) 완제품 제작 지원 : 아이디어의 상품화,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 등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제품 경쟁력 향상
- (3) 기술교류회 운영 : 경북기업연구소협의회 기업들의 자발적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, 공동전시 등을 통한 기업 및 제품 홍보 지원
- (4) 신기술·정책동향 제공 : 4차 산업혁명 관련 이슈 및 핵심 산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한 신산업 발굴 및 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

라. 출연의 필요성

- (1) 대기업에 비해 제한적 기술과 아이템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기술 확보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

- (2) 중소기업의 수직적·수평적 경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일괄 지원 체계 구축과 협업 R&D 과제기획 등을 통해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선제적인 대응 필요
- (3) 지역의 산학연관 주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지식허브 기능과 구미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 사무국, 경북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 혁신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사업 지원

마. 추진 실적

(1) R&D과제 기획(2건)

- * 압축강도 120MPa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한 비굴착 대구경하수관거 갱생공법, 3D 프린터용 에폭시 수지를 함침한 연속 탄소섬유 복합 필라멘트 개발

(2) 완제품 제작 지원(4건)

- * 전동 유틸리티 카에 적용되는 적재함의 경량화 및 내구성 강화, LCoS가 적용된 투과형 옵틱 엔진 개발,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중력 향상 콘텐츠 기반의 VR 디바이스 개발, AR 글래스 스마트팩토리 설비 유지보수 제품 개발

(3) 기술교류회(1회)

- * 제2회 경북기업연구소협의회 기술교류회 - 지능형 디지털분야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(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(3)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 제4조, 제5조
- (4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,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※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

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
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
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
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
되는 사업

□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

제4조(책무)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시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
진흥시책 및 그 인력·인재 육성, 정보네트워크 구축, 기반 강화
등에 대한 시책과 동시에 독창적 및 공동 연구개발, 신기술의 보급·
지원 등 해당 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 소재 기업·대학·연구기관 등이 지식기반 경제 사회에
부응하는 과학기술 혁신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 과학
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
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.

제5조(과학기술 진흥사업 등) 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
국가기관, 정부출연기관, 공공기관, 학계, 연구기관, 산업체, 과학

기술인 단체 등(이하 “관련기관 등”이라 한다)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학기술진흥사업(이하 “진흥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연구기반 및 과학문화시설 확충

2. 다음 각 목의 산업 육성

가. 첨단·지식기반·뷰티·탄소 및 물산업

나. 부품·소재산업

다. 신성장동력산업

3. 중소기업 신기술·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이 동시에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관련사업(이하 “관련사업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인력 육성사업

2. 문화 확산사업

3. 혁신역량 등 강화·활성화사업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재원의 조달)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
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기술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연구개발사업
2. 기술교육훈련사업
3. 인력양성사업
4. 창업보육 및 성장보육지원사업
5. 정보교류사업
6. 기술혁신지원사업
7. 시험생산사업
8. 시설·장비 운용사업
9. 전자·정보통신기기 등 부품소재육성사업
10.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
11. 그 밖에 기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소 관 부 서		신성장산업과
입 안 자	과 장	박 노 돈
	담 당	전 명 성
	담 당 자	안 유 진 (480-6164)